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39
----------	------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 김기덕 의원(1명)

찬 성 자 :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남창진,
민병주, 박강산, 박승진,
박영한, 박철성, 봉양순,
소영철, 신동원, 신복자,
왕정순, 유만희, 유정인,
윤종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한 신, 홍국표 의원(29명)

1. 제안이유

- 최근 서울시 공공화장실,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 발생 및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불안감 발생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불법촬영 예방 시스템 등의 명확한 용어 정의 및 공공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 가. '불법촬영 예방 시스템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
- 나.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다. 기타 : 별도 작성내역 없음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이란 공공화장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및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설비를 말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 시스템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 이란 공공화장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및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설비를 말한다.</u></p>
<p>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②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u></p>